

2016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일시 : 2016. 1. 19(화) 14:00 ~ 16:00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 (4층)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2016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프로그램

14:00 ~ 14:10 (10')	<p>인 사 말 씀</p> <p>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송대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p>
14:10 ~ 14:15 (5')	<p>토론 개요 및 참여자 소개</p> <p>토론회 사회 :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p>
14:15 ~ 14:45 (30')	<p>발 제</p> <p>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와 제언 - 김 재 황 장학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과)</p> <p>대전지역 학생 인권실태 현황과 인권 증진 방향 - 소 순 영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p>
14:45 ~ 15:45 (60')	<p>토 론</p> <p>고 영 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권 성 중 (대전 복수고등학교 교사) 안 현 (용산고등학교 학생) 박 병 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이 병 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이 건 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 석 연 희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센터장)</p>
15:45 ~ 16:00 (15')	<p>전 체 토 론</p> <p>참석자 전원</p>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안석모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소년 인권 증진방안 토론회」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최기관에서 지난해 공동으로 실시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실태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대전지역 청소년의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출범한 대전인권사무소가 2016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청, 청소년 인권단체, 학생인권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 지역 청소년 인권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대해 고민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포함한 인권정책 수립 및 권고, 진정 사건 조사 및 구제업무, 인권교육 및 교재개발, UN과 협력 및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증진을 위해서 2012년 8월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하여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적극적 대응입니다.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을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고,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며, 학생의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등이며,

넷째, 차별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를 위해, 차별 위주에서 인권 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차별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는,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 권고 내용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인수하여, 현장 활동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의 실효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인권의 중추적 모니터링 기관으로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 실시한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현황 조사를 통하여, 아동권리협약 중 권리항목 42개 항목에 대한 국내 권리이행 현황을 분석하였고,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 사각지대 아동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인권,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인권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시설 방문조사 실시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저는 대전 청소년 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소년 인권증진 토론회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 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좋은 제안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지역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 업무와 지역 현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활동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폭력,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일관된 관점과 체계성이 부족한 현실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유형 중 1위가 학생인권과 참여의 보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독 ‘청소년, 학생’의 인권은 교육적 차원에서 ‘유예’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어 왔었고 학생들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나이와 신분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청소년의 인권이 대학입시 등을 빌미로 그 권리의 향유를 유보당하는 현실은 장차 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아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는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토론회에 참여하신 학생·교사·행정가·시민단체 그리고 시의원께서는 미래사회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증진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물음표와 괄호 안에 부당하게 갇히지 않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토론회 개최를 기원합니다.

2016. 1. 19.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송대운**

2016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발 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와 제언

김 재 황 장학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과)

대전지역 학생 인권실태 현황과 인권 증진 방향

소 순 영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

김 재 황 장학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과)

1. 학생인권조례의 현 주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2012.1.1. 시행)」가 시행된 지 4년, 일방적인 체벌은 지양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게 광주 교육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이나 규제가 크게 줄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자살·왕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이 인권의 근본정신 보다 복장·두발 문제, 체벌, 휴대폰 문제 등 일부 사안 중심으로 축소되어 첨예한 찬반 논란으로 전개되다 보니, 실천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교육주체들의 인권감수성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을 매개로 학교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시행된 지 4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생활교육에서의 일부 고질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의 기본이긴 하나 본질적이거나 총체적이지 않은 두발, 복장 등 용모의 문제와 이를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의 개정이 학생인권조례 현장 정착의 주요 현실적

목표가 됨으로써 오히려 인권의 온전한 내용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의미 있게 실행되지 못한 결과로서 자칫 인권이 학교 안에서 기형적으로 고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언급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바탕에는 인권을 중시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에 인권교육을 중시하고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이 성숙되어 가는 한 학교폭력 같은 문제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¹⁾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인권교육의 내실 있는 시행은 나름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을 갖춘 듯 하지만 실제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들은 오히려 그와는 상반되게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과 구성원들의 의식 언저리에서 피상적이고 당위적인 규범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반증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은 일인 이유는 그것이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유력한 기제는 교육이다. 이제 학교에서의 인권 담론은 일부 자유권(신체, 개성, 전자기기 사용 등의 자유) 보장의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한 문제제기 및 그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 학교 구성원들의 조례 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생활교육 담당 교사, 교감, 교장 학생인권조례 전달 연수 실시

⇒ 교원 및 학생 대상 학생인권조례 이해 교육 실시(전체 학교)

1) 국가인권위원회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2011)’에서 교원의 87.5%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 학부모 총회 시 학생인권조례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전체 학교)
- ⇒ 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리플렛 겸용) 부착(전체 학급)
- ⇒ 학교 홈페이지 학생인권 게시판 설치 및 자료 탑재(전체 학교)
- ⇒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제작 및 보급(전체 교원)
- ⇒ 학생인권조례 홍보만화 제작 및 보급(전체 중·고)

○ 학교 관리자 인권 책무성 부족

-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박 2일 학교장 연찬회 개최(초등/중등)
- ⇒ 학생인권조례 업무추진매뉴얼 제작·보급(학교 관리자, 생활교육 담당 교원)
- ⇒ 학생인권조례 현장 컨설팅(조례 이행 미흡 학교 대상)
- ⇒ 학교평가에 학교민주인권친화도 반영

○ 단위학교의 인권 학습 및 실천 역량 미흡

- ⇒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정책 및 콘텐츠 개발, 교육지원 등)
- ⇒ 민주인권동아리 육성 및 지원(연간 100개 동아리, 동아리별 200만원 지원)
- ⇒ 인권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 추진(우수사례에 대해 등급표창)
- ⇒ 학교인권증진공모전 개최(3개 분야 - 인권수업, 인권영상, 인권아이디어)
- ⇒ 학교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 ⇒ 인권평화교육 직무연수 실시
- ⇒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에 인권교육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 인권교육 교재, 콘텐츠 등 개발·보급(국가인권위 협력, 또는 자체 개발)
- ⇒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시, 국가인권위, 시민사회, 대학)

○ 학생인권 부각으로 교권 위축·침해에 관한 우려

- ⇒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및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 보급
- ⇒ 교권보호조례 제정(교권보호 지원센터, 교권보호위원회 등 설치)
- ⇒ 교권보호 가이드북 제작·보급
- ⇒ 찾아가는 교권 연수 실시
- ⇒ 학생생활규칙 예시안 보급(교사의 생활교육 권한 등 명시)

○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전 학생인권조례 후속 사업 진행
- ⇒ 지역 언론을 통한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 및 조례 안착의 대세적 분위기 홍보
- ⇒ 단위학교에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안내 및 연수(관리자, 생활교육부장 연수)
- ⇒ 학교평가에 학교민주인권친화도 반영
- ⇒ 교원단체, 시민사회를 통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대한 비판 여론 제기

○ 학생 자율적 통제 및 자치 역량 미흡

- ⇒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생 참여권 보장
- ⇒ 학생의회를 통한 학생 주도적인 실천 방안 논의
- ⇒ 학생 인문학교실 운영
- ⇒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지역 청소년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생자치활동 지원 체제 정비
- ⇒ 지역 청소년 단체와 공동으로 학생자치활동 학교(캠프) 개최
- ⇒ 학생회실 및 동아리실 설치 지원
- ⇒ 대규모 청소년 문화역량 결집 및 정책의제 제안 축제 개최(청소년독립페스티벌)
- ⇒ 청소년 200인 원탁토론 개최

○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형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구제

- ⇒ 민주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 운영(전문조사관 1명, 상담사 3명)
- ⇒ 외부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6급 상당)으로 채용하여 전문성과 중립성 보장
- ⇒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요청을 위한 유무선 체계 구축(홈페이지, 전용전화)
- ⇒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와 협력 체계 구축(조사·구제 전문성 공유)
- ⇒ 광주지방노동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협력 체계 구축
- ⇒ 청소년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3.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몇 가지 현황 지표

3.1. 학생생활규칙 개정 현황(2012.12.)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관내 전체학교 조례 이행실태 및 학생생활규칙 개정 현황을 조사하였다. 시행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등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할 권리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광주학생인권조례 이행실태와 조례에 근거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학교의 95%에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는 ‘인권아 이디어 공모전’, ‘인권주간 실시’, ‘인권사진전’, ‘인권동아리 활동’ 등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관시키는 학교도 44개교나 되었다.

아울러 광주 지역 중고교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 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학생생활규칙’개정 현황에 있어서는, 두발의 경우 염색을 제외한 두발 길이 자유 및 파마를 허용한 학교가 중학교 90%, 고등학교 96%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학생 복장 규정은 “학생 스스로 결정”을 채택한 학교 수가 전체의 50%에 근접했고,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의 경우 “자율적 반납” 보다는 “일괄적 수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지품 검사 규정은 대다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범위’에서 검사를 허용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3.2.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지역 간 비교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2년 전국 초·중·고 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있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벌만 놓고 봤을 때 ‘전혀 없다’가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은 58.7%에 이르는 반면, 미시행지역은 39.8%에 머무른다. 다른 쟁점들 역시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대답이 23.3%와 41.0%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학교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시 27.9%와 53.2%로 간격이 크다. 다소 설부르기는 하나 학생인

권조례의 시행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광주의 학생들이 더 행복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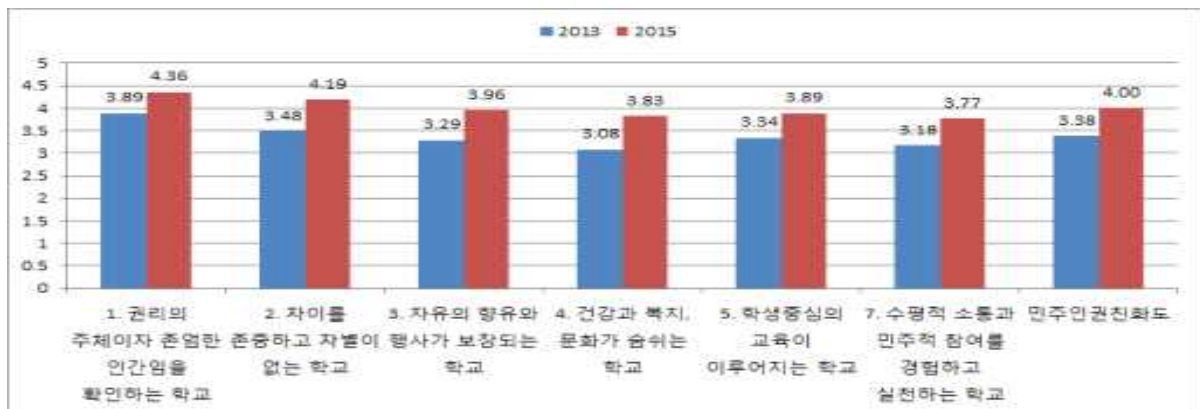
3.3. 학생인권실태조사(2013.12.)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체 지지도는 긍정 의견(53.8%)이 부정 의견(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전반적인 인권보장도는 긍정 의견(43.5%)이 부정 의견(14.4%)보다 월등히 많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 의견(53.8%)이 부정 의견(12.7%)보다 월등히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지역 학생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지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체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인권보장도가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학교민주인권친화도 추이(2013년 VS 2015년)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관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인권 보장 실태 및 단위 학교 민주적 학교운영·의사소통 실태를 진단·조사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지수)’를 개발하였다. 학교 민주인권친화지표는 학교 구성원과 교육 환경에서의 인권과 관련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나 통계이며, 인권의 양적·질적 상황을 포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인권상황을 총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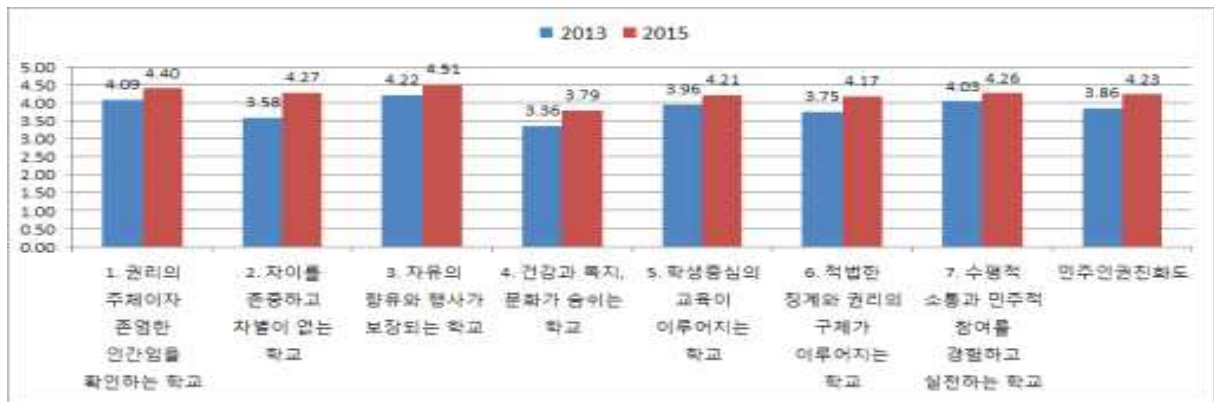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는 총 7개 영역, 4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과 2015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학교의 민주인권친화도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민주인권친화도 비교]

민주인권친화지표 구성 체계인 대분류 7개 각 영역(6영역 제외²⁾)에서 2013년과 2015년 학생의 민주인권친화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민주인권친화도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건강과 복지, 문화가 숨 쉬는 학교’ 지표가 0.75점 상승하여 2013년과 비교하여 가장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좋아진 지표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로 2013년도와 비교하여 0.71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의 결과만을 두고 봤을 때 7개 지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4.36점을 기록한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학교’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4.19점을 기록한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영역은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참여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학교’로 3.77를 기록하였다.



[교직원 민주인권친화도 비교]

2013년과 2015년 교직원 민주인권친화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7개 영역 모두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아진 영역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로 0.69점이 높아졌으며 두 번째로 가장 좋아진 지표는 ‘건강과 복지, 문화가 숨 쉬는 학교’로 0.43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결과만을 두고 봤을 때 7개 지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4.51점을 기록한 ‘자유와 향유와 행사가 보장되는 학교’이고,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4.40점을 기록한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영역은 ‘건강과 복지, 문화가 숨 쉬는 학교’로 3.79를 기록하였다.

2) 6영역은 ‘적법한 징계와 권리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한 측정으로 일부 조사 문항을 수정하여 비교 분석이 적절치 않아 별도로 처리하였다.

5. 조례 시행과 관련한 학교 현장 변화 스케치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광주의 A중학교는 학생들의 용의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그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교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용의 지도로 인한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교육의 다른 형태를 고민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용의 지도가 없어져 모든 학생이 염색한다고 해도 참는 연습을 하자는 데에 선생님들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용의 단속을 위한 교문지도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교복 치마가 너무 짧다. 머리가 왜 그러냐?” 등 교사들의 ‘엄격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던 아이들은 서서히 자유로운 분위기에 적응을 한다. 퍼머를 하는 아이들, 귀걸이를 착용한 아이들이 늘긴 했으나 여전히 녀석들은 소수일 뿐이었다.

그렇게 용의 규제가 사라진지 2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듯해 놀라워한다. 생각보다는 아이들의 외양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것에 대견해한다.

“올해 우리 학교 어때?”

“좋아요~”

“뭐가?”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학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진짜? 단순히 그렇다고 학교 오는 것이 즐거워?”

아이들은 그렇단다. 학교 오는 것이 즐겁고 교문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친숙해지고 항상 주기적이었던 갈등의 요소가 사라져서 좋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우리 학교는 참 좋은데 우리 학교를 잘 모르는 어른들이 학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요.”라며 불만 소리를 한다. 기존의 관습대로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지역 사회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귀에도 들리나 보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과 우려를 가진 지역 주민은 바로 학부모들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모든 광주지역 학교는 조례에 부합하게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학급회의와 전체 대의원 회의를 통해 학교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 회의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요

쟁점을 모아 설문지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복장과 머리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고 학생다운 단정함을 요구하였다. 그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함께 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혹자들은 참여한 의견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로에 입장에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공유되다 보니 오히려 갈등의 폭이 깊어지기보다 점점 합의점을 찾아가고,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B중학교의 공개 토론회 장면이다. 학부모 대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용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 보다는 머릿속을, 옷차림 보다는 가슴속을 살피고 채우는 교육을 하겠습니다.”라는 교사 대표의 진정 어린 호소에 공감하고 급기야 입장을 수정하고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학생 대표가 의젓하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학생인권조례가 겨냥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한다. 토론회 내내 학부모들의 반응은 너무 진지했고 뜨거웠으며, “학교에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공감하게 되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등의 발언으로 교육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모두가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교육적 관계 회복**

⇒ 용의 지도로 인한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 및 교원 생활지도업무 경감

“두발 제한 규정을 없애고 나니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눈을 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아이들과 나눌 새로운 화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예전에는 선생님들을 피해다니고, 혹시나 지적 받을까봐 긴장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게 즐거워요.”

[학생]

○ **학교 규정의 권위 제고 및 교사의 지도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 증가**

⇒ 학교 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 참여로 규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학생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그 규정에 근거한 지도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수용도가 높아짐

○ 학교 공동체 소통 문화 조성 및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공청회·토론회 등 기존에 없었던 소통 문화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감동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증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학부모1]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인지 몰랐다.”
[학부모2]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우리학교가 정말 민주적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학생]

○ 차별 없는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관한 진지한 고민 시작

⇒ 인권조례 시행 초기와는 달리 차별에 대한 교사들의 성찰과 함께 새로운 생활교육 방법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연구와 실천이 시작됨

⇒ 민주인권동아리 중 교사 동아리의 경우 ‘인권교육’과 함께 ‘생활교육’을 주제로 한 활동이 다수이고, 학교 단위 ‘생활교육협의회’ 등 협력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학교가 등장함

⇒ ‘통제와 관리’ 중심의 생활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율과 참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적 고민이 시작됨

6.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과제

학생인권조례가 주로 학교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의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와 연계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여전히 교사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것은 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이고, 학교가 독점했던 교육을 마을 전체가 나누어가지는 배움의 통합적 구성이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차별이나 강압적인 인권침해는 학교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이 끊임없이 도전 받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행 4년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명암이 있었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성과는 그 취지나 방향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생존경쟁의 장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기르는 터전임을 인식했고, 학생은 규제·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임을 자각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학생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컨설팅,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보장받는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터운 연대와 실천을 시도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보완하며, ‘광주학생인권조례 시즌2’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시즌1’의 주체가 교육청이었다면, ‘시즌2’는 우리 모두, 즉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의 몫이다.

- 학생 자유권(신체·표현의 자유 등) 보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 인권교육 및 자치활동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수립
-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 교내의 인권을 넘어서, 사회적 의제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 관내 청소년단체 및 인권단체, 시민교육기관과의 적극적 협업 시스템 구축
- 학생소수자(학생 선수, 다문화, 장애학생 등) 인권 및 제3세대 인권인 평화롭게 문화와 생태를 향유할 권리를 학생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 인권친화적 학교 및 학급 운영 모델 발굴 및 일반화
- 단위 학교 차원의 인권 상담 및 구제 통로 마련

대전지역 학생인권 실태 현황과 인권증진 방안

소 운영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I. 개요

‘2014년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가 2014년 10월 말 발표되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역별 학생인권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기획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전 인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나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단지 ‘표본이 작으므로 설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난무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³⁾는 2015년 4월 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해 대전의 9개 인권관련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대전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대전지역 중, 고등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실태와 학부모와 교사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는 2015년 현재 대전 학생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교육청의 변화를 끌어내고 싶었다.

실태조사는 2015년 10월 16일~30일까지 대전지역 중, 고등학생(882명), 교사(430명), 학부모(397명)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부가적인 내용은 ‘2014년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첨부하여 강조하였다.

3) 2015년 4월 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해 대전의 9개 인권관련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아수나로대전지부(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 이상 총 9개 단체, 가나다순)

II. 대전 학생인권 실태

1. 고등학생 54.3%는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36.3%의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매우 침해당하고 있다는 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54.3%의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침해당하지 않는다. 24.6%) 중·고등학생들의 40.2%는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34.5%는 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2. 체벌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⁴⁾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생의 지도는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고, 따라서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부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학생은 체벌로 인해 불안감, 우울증, 학교 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처벌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체벌 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라고 2002년 권고에서 밝히고 있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48.7%, 교사의 48.2%, 학부모의 47.9%가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체벌이 "없어져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의 의견이 학생 59.9%, 교사 53.1%, 학부모 66.1%에 이른 점은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체벌 외의 대체적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체벌/언어폭력 ‘우수’ 다발 지역5】

순위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교사의 언어폭력
1위	대전(61.8%)	경북(77.1%) 울산(77.1%)	대전(54.0%)
2위	경북(59.6%)		경북(53.2%)
3위	울산(58.3%)	대전(76.1%)	부산(51.7%)
4위	전남(56.5%)	부산(69.0%)	울산(51.0%)
5위	경남(54.5%)	충북(68.4%)	충북(47.6%)

○ 서울과 경기, 강원 등 교육청 수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친화적 생활 지도 정책이 시행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 앉았다 일어서기 등 교사에 의한 기합성 체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는 경북과 울산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주 또는 가끔 기합성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체와 도구를 활용한 체벌에 비해 기합성 체벌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 신체와 도구를 활용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1~3순위를 기록한 대전, 경북, 울산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기합성 체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1~3순위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다. 신체와 도구를 활용해 학생을 함부로 때리는 체벌이 빈발하는 지역(이른바 ‘직접체벌’)은 기합성 체벌(이른바 ‘간접체벌’)도 남용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도 대전→경북→부산→울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언어폭력도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가. 체벌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내 청소나 봉사, 전문가와 상담 요구

상벌점제를 포함하여 체벌 대체수단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교내 청소나 봉사,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구했다.

5) 이하 표 안에 있는 내용은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나.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 “학생 - 교사의 인식 변화, 교사 -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 규정 마련, 학부모 - 전문 상담 교사 충원”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은 교사의 인식변화(51.6%),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분담 시스템 구축(41.5%)을, 교사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규정 마련(47.4%),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43.4%)을, 학부모는 전문 상담 교사 충원(40.2%), 교사의 인식변화(39.9%)를 생각하고 있다.

3. 복장, 두발 : 학생 77.5%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발·복장의 자유란 학생들이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자거나 염색을 하도록 하자거나 사복을 입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복장을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성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두발·복장 규제는 특정 머리 모양이나 색깔, 복장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⁶⁾'임을 확인하였다.

두발, 복장에 관한 권리에 대해 학생(77.5%), 중학교 교사(73.1%), 고등학교 교사(62.7%) 모두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6)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는 학생 두발제한과 관련한 정책검토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발·복장규제 ‘우수’ 다발 지역】

순위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	양말, 외투 등 복장 규제
1위	대전(89.0%)	대전(94.9%)	울산(82.8%)
2위	인천(79.9%)	부산(94.1%)	대전(80.1%)
3위	부산(77.7%)	울산(90.1%)	부산(80.1%)
4위	충북(69.5%)	인천(89.2%)	충북(78.6%)
5위	울산(65.1%)	경북(86.2%)	경북(74.5%)

○ 두발·복장규제가 심한 지역은 대개 체벌과 언어폭력도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역이다.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의 경우 지역별로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머리 모양이나 색깔 규제나 복장규제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경험한다고 답해 지역별 격차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금지가 명시된 경기도의 경우에도 여전히 길이 통제가 2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두발 전면 자유와 복장 자유가 명시된 서울의 경우,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도 40%에 육박하고 복장 통제는 70%를 넘어설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가. 두발 제한 규정 : 학생은 반대, 교사는 찬성

학생 72.5%는 두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교사는 5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두발 제한이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50.8%가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4. 휴대전화 규제 규정 : 학생은 찬반 47.7% 동수 응답, 교사, 학부모는 찬성

휴대전화 규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학생이 동수로 47.7%였다. 그러나 교사 91.4%, 학부모 88.1%가 휴대전화 규제 규정을 찬성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제 ‘우수’ 다발 지역】

쉬는시간, 점심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순위	지역
1	울산92.2%
2	대전88.2%
3	경북87.8%
4	인천86.3%
5	경남86.2%

○ 휴대전화에 대한 규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위반임에도 경기,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횡행하고 있다. 경쟁적, 억압적 학습 분위기가 강제되는 지역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도 심했다.

5. 학생 대부분이 강제학습에 시달린다.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충수업 : 89.8%, 야간자율학습 85.7%, 방학 중 보충·자율학습 80.2%)

【강제학습 ‘우수’ 다발 지역】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1위	경북 (90.4%)
2위	대전 (84.9%)
3위	울산 (80.7%)
4위	광주 (69.1%)
5위	부산 (66.1%)

가. 0교시,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규정을 대다수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대상)

고등학생 84.1%, 고등학교 교사 61.4%, 고등학생 학부모 74.2%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의 36.1%가 0교시,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강제 참여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학생들의 대학 입시 준비를 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6. 상벌점제의 교육적 효과 : 학생은 절반 이상 효과 없다. 교사, 학부모는 절반 가까이 효과가 있다.

상벌점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는 것이 도입 명분이었다. 그러나 벌점제와 체벌이 학생 통제수단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체벌 대체 효과는 약했지만 비교육적 효과는 오히려 커 문제가 되고 있다.

상벌점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은 20.2%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은 68.5%로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사는 부정적 평가(40.7%) 보다 긍정적 평가(47.5%)가 6.8%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도 47.5%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상벌점제 폐해 '우수' 지역】

순위	사소한 잘못/실수에도 벌점을 준다.		벌점 또는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벌점 또는 상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충북	67.3%	울산	61.5%	대전	80.9%
2위	대전	65.1%	경북	59.0%	충북	79.8%
3위	울산	60.9%	인천	58.9%	인천	79.7%
4위	인천	58.5%	부산	58.3%	울산	79.7%
5위	부산	56.9%	충북	58.2%	경북	79.3%

○ 벌점제의 남용, 비교육적 효과, 자의적 운용 등 벌점제의 남용과 관련하여서는 충북, 경기, 인천 등 다른 인권침해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던 지역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서고 있다.

7.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 고등학생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의 구성원이자 배움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운영 전반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마땅한 책임일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 참여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 반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견(40.4%)이 높지만, 고등학생은 45.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경우 초중고 모두 잘 보장된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모르겠다는데 응답한 비율도 27.8%로 높게 나타났는데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억압 ‘우수’ 다발 지역】

순위	교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1위	대전 (84.2%)	대전 (89.0%)	울산 (74.0%)
2위	부산 (83.6%)	부산 (84.6%)	경북 (71.8%)
3위	경북 (83.5%)	울산 (83.9%)	대전 (68.4%)
4위	울산 (82.3%)	경북 (77.1%)	부산 (68.0%)
5위	인천 (71.7%)	대구 (75.1%)	인천 (62.3%)

○ 학교 교칙(학칙) 제·개정을 포함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학생이 의견을 표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등 학생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질문에 대해 지역별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은 대전, 부산, 경북, 울산으로, 옆치락뒤치락 서로 1순위를 다투고 있다.

Ⅲ. 인권증진 방안

인권 인식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설문조사결과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도움을 받는 절차를 모르거나 방법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0%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체벌에 대해선 교육적 효과가 없음에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오는 것은 체벌을 대체할 교육수단을 찾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 설문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다. 대전 학생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의 조례이다.’⁷⁾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려면 교육 당국이 나서 시의회에 발의하거나 주민발의를 통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은 주민발의를 추진하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지역 정서도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편이라 쉽지 않다. 교육감이 적극 나서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인데, 안타깝게도 설동호 교육감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참고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필두로 2012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제정·공포되었고,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 발의, 주민발의, 교육청 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은 곳은 전국적으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교사, 학부모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학생 74.5%, 중, 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사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근무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2. 이제 혁신학교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형 혁신학교 '창의인재 씨앗학교' 공모에서 초등 2개교와 중학 3개교를 선정했다. 창의인재 씨앗학교는 새로운 학교 문화 풍토 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중심 수업 혁신, 민주적·도덕적 생활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4년간 추진한다.

중점추진 내용 중 민주적·도덕적 생활공동체 운영이란 자발적 참여와 소통의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전 공유와 변화의 제안→논의→실천과정에서의 협력적 소통, 민주적 회의 문화와 학년별 자치시스템 강화, 학급회, 학생회 중심 학생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학교 정책 결정에서의 학생 참여 기회 확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학교자치의 실현이다. 자치활동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정신이다. 교육 당국의 지시나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학교 운영에 대한 미래상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 방향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본 철학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라는 틀만 가져다가 또 다른 형태의 '연구학교' 내용물을 쏟아 붓는 것은 큰 잘못이다.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 혁신'에 대한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혁신학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미 여러 지역의 수많은 사례가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성공적인 혁신학교를 통해 학생 인권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3. 학생인권 실태조사 중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48.6%), 교사(71.0%), 학부모(47.3%) 모두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들었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는 교육청 차원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다. 학생은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사는 교사의 업무경감 및 지원 강화, 학부모는 인권 교육을 들었다. 우리는 입시경쟁교육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사의 업무경감 및 지원 강화, 인권 교육 강화는 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모쪼록 교육청은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토 론

고 영 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권 성 중 (대전 복수고등학교 교사)

안 현 (용산고등학교 학생)

박 병 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이 병 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이 건 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

석 연 희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 학생인권 증진 방안

고 영 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1. 학생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헌법 10조와 37조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어쩌면 ‘학생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것으로 성인인권, 학생인권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인권이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견해 때문이다. 또 그에 반대하는 반론으로 미성숙한 학생은 지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부 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 학생의 행복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 전근대적인 억압적 문화를 없애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학생의 교육지도 위한 규칙이 별도로 있는 것 자체가 인권의 제한이나 침해라고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 규칙이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환경도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런 변화는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8)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 거	현 재
교사의 권위↑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의식↓ 생활지도 방법 - 단순 학교폭력 유형 - 신체폭력	교사의 권위↓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의식↑ 생활지도 방법 - 복잡 학교폭력 유형 -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2. 대전지역 학생 인권 문제

우선 앞의 발제에서 말씀하여 주신 2014년 전국 학생 인권조사 결과⁹⁾에서 대전에 인권을 침해당하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교육청에서 2014년의 설문조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도마다 표본이 숫자나 형태가 모두 다르고 표본오차도 없는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시도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교육청에서도 학생 생활지도의 중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실제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기본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낸 학생·교사·학부모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 보고서¹⁰⁾의 내용으로도 35% 정도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학교가 좀 더 학생 인권에 대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두발규제를 고등학생의 경우는 강제적 자율학습을 가장 큰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두발이나 복장 제한 규정은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침해하게 다른 관점을 가져,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간에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에 대한 규제 규정은 일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9)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4.10.28,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 대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5.12.3, 대전청소년 인권네트워크, 대전인권사무소)

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공포하였고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4년 전북이 제정하였다. 그리고 몇 개 시·도가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의 의견과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시도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교육청 김재황 장학사님의 발제문에서 보듯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학생의 인권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앞으로 학생인권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해줘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조례의 제정을 조금 늦춰 우선 기반을 마련한 다음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 없이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는 그 부작용이 커 오히려 학생인권 증진에 역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학생지도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학생들이 급하게 시행되는 인권조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서 시행 초기에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면 “인권조례 몰라요?” 하고 반발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었다며 인권조례가 끼친 부작용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인권의 내용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 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학교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해 아이들 스스로 지키게 하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학생인권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이런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에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인권의 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하지만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르다. 구성원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대전에도 매 맞는 교사가 늘고 있다. 최근 3년 간 교권 침해가 700건을 넘고 있고 폭행이나 교사에 대한 성희롱 건수도 늘고 있다. 물론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되는 개념을 아니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협받고 있는 교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요즘 학교에서 이미 많은 교사들이 무력증에 빠져 있다.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쳤더니 어디 때려보라고 달려 들고, 나머지 학생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댄다며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최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과 함께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모두 포함한 학교구성원 인권조례로 제정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다소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한 매체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지만, 막 무가내로 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훈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매번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 학생을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퇴학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학생 체벌만 금지했을 뿐, 원칙대로 퇴학 등의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여 조례를 추진한다면 학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학생 인권 증진 방안

학생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로, 학교규칙을 인권 친화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두발이나 복장 규제 같은 것들이나 강제 자율학습 같은 사안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머리 길이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나 무조건적으로 자율학습을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지도를 위한 손발은 다 묶어놓고 교사에게 수업도 잘하고 학생 생활지도까지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모두 고려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이 인권의 근본정신 보다 복장·두발 문제, 체벌, 휴대폰 문제 등 일부 사안 중심으로 축소되어 첨예한 찬반 논란으로 전개되다 보니, 실천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교육주체들의 인권감수성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의 인권존중 패러다임은 학생에 대한 규제 제한이라는 소극적 범위를 벗어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상호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사-학생 간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이다.

학생들의 인권보호가 학교 규칙의 개정이나 조례의 제정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도록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학생 지도 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학생들도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 선생님을 따르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런 학교가 많아질 때 학생들의 인권보호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하여야 한다. 교권의 강조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학생인권의 강조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존중받기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의 확산이 우선 필요하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앞으로 대전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대전지역 학생인권 실태 현황과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권성중

(대전 복수고등학교 교사)

우선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불리우는 이유는 교육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상관성을 배제한채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그 요소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논의되는 학생인권조례가 그 출발점 자체가 학생인권의 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인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학생체벌에 대한 규정은 이미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을 통해 개정되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또한 학교규칙을 정하고자 할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4항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의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 의해 학교 자율적인 규칙에 의해 학교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인 지방조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학생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하신 소순영선생님, 김재황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대전의 인권에 문제점을 제기해주시고, 광주의 우수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 먼저, 소순영선생님이 제기하신 대전의 인권 설문결과에 대해 선생님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입증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공개와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대전에 근무하고 있고, 한 학교에 학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설문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샘플링 하셨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형태, 비율등을 제시해주셔야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설문지를 나누어지고, 설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뀔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저는 작년말 시의회에서 주최하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에 관한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대전시의회에서 추진하시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자료를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부분과 겹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학습할 권리입니다. 2항의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5항 교직원 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표현의 자유에서 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관계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10조 5항의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첫째,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이 누릴수 있는 자유만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 광주교육청 김재황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과 이후에 교권침해사안의 건수 변화, 교사 명퇴건수는 2014학년도 특수성이 있었지만 차이의 추이, 교사의 교직 만족도의 차이,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및 신뢰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우고 깨우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인권의 확장된 넓은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만을 주고, 아직 어리기에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요소를 낮춘 상태에서 가르친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단위학교의 문제점을 현재의 법규나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만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충분히 학생들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안이 아닌 좀더 성숙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권증진 토론회 토론문

안 현

(용산고등학교 학생)

1. 고등학생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있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도)에도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은 계속주면서 상점은 어떻게든 열심히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그냥 바로바로 주시는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벌점은 쉬는시간에 복도에서 학급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거나 뛰다가 걸려도 벌점을 받을수도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는 교육선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2학년에서 고등학교3학년으로 올라가는 예비고3학년들은 방학보충을 거의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예체능하는 친구들도 학교에 나와 방학보충을 참석하고 3시부터 예체능을 준비하는데 처음 실태조사에서는 참여 불참여 선택란이있었는데 불참을 선택하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학생부장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굳이 방학보충을 안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을 준비하는게 더 좋다고생각합니다..

2. 체벌은 학생, 교사, 학부모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역이용해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막대하는게 보입니다. SNS에 보시다시피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이 자리는 학생인권에 대한 자리지만 저는 교권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에게 막대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의지해 선생님들에게 함부로하고 집에 와서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우겨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내렸다는것에 화가나셔서 간혹 전화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말 없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안쓰럽고 학교에서 징계

를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 선부도장이 같이 들어가 징계내용을 듣는데 학부모님이 너무 학생의견만 듣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때는 선생님들의 인권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복장, 두발: 학생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근처의 학교는 두발자유화를 진행하고있는데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선도부 부장으로써 학교에 건의를 해봐도 두발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임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 두발자유화가 됐으면하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항상 단정해야 된다고 남자머리 규정은 뒷머리는 셔츠카라에 닿으면 안되고 옆머리는 귀를 덮으면 안되고 앞머리는 눈썹이 보여야합니다 여자머리 규정 앞머리가 눈썹에 닿으면 안되고 뒷머리는 항상 쇄골 위 라고 합니다. 근데 근처 학교 학생들을 보면 머리길이가 자유롭고 파마까지 허용이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머리가 길면 하루는 머리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근데 학교에서 야자를 끝나면 11시에 학교가 끝나는데 그렇다고 저녁을 안먹고 머리를 자르고 야자를 하는것은 배가고파서 야자에 집중이 안됩니다. 다음날 머리를 검사맞지 못하면 그린마일리지(벌점)1점을 받게됩니다. 또 다음날 검사를 못받으면 그린마일리지(벌점)3점을 받습니다. 하루만에 2점이 왜 늘었는지 궁금하시죠? 교사지시불위행 이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안들었다는 자체로 2점이 추가 됩니다 월요일날 머리검사에 걸리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머리를 정리해야되는데 그사이에 벌점은 받고 훈계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반곱슬 머리가 쉬는시간에 옆드려있다가 선생님이 학생이 옆드려있는데 파마했다고 머리를 잡을채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그 학생은 잘못없이 반곱슬이라고 해도 선생님은 그말은 믿지않고 벌점을 받고 다음날까지 머리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에 자연갈색인 머리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연갈색인머리도 일단 잡고 뭐라하시고 자연갈색임을 확인하기위해 부모님에게 전화까지 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후 그래도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 학생은 어쩔수없이 염색을 하고 등교를 하고 몇주 후 또 다시 반복해서 풀리고 염색하고 풀리고 염색하고 돈이 많이 나가서 반색을 했던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염색을 한다는것도아니고 파마를 한다는것도아니고 머리길이만 조금만 더 늘려달라고해도 쓸데없는 소리하지말라고 뭐라하는게 선생님입니다. 외투(패딩)도 교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입지를 못합니다. 등교시

선도부가 신발장앞에서 외투안에 마이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을 벌점과 외투를 벗으라고 지도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추운날에 벌점을 주고 외투를 벗으라고하기가 미안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실안에 들어가서 외투를 입어도 수업시간에는 못입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 불착용 후 외투 착용시 벌점을 또받고 외투를 일주일입수당합니다. 솔직히 마이를 입고 외투를 입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마이를 입고 후리스, 집업을 입었을 경우 팔을 올릴수가없고 추운날에는 지퍼를 못잠 그고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잘안입는 건데 선생님들은 그말 조차 무시하고 무조건 입으라고 하십니다.

4. 휴대전화 규제 규정

저희 학교는 휴대전화 규정이 강화되었어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휴대전화 및 전자 기기는 모두 휴대전화 가방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휴대전화 소유시 적발시 벌점 5점과 휴대전화 압수 첫 번째 적발시 1주일 두 번째 적발시 한달입니다. 그래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게임을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한 학생들은 부러워하거나 다음 날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금지했으면 전자기기라도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학생들의 마음입니다

5. 학생 대부분이 강제학습에 시달린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해봤는데 반강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과후학습은 학교정상수업이 끝난 뒤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총 2교시 방과후학습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굳이 학교에서 2시간을 있을시간이 필요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치능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운동을하는 학생은 도장에가서 운동을 배우고 요리를 하는 학생은 요리교실에가서 요리를 배우면되는데 예비 고3은 학교에서 더더욱 강제적인시스템이 많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태권도예비사범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대상으로 운동을 하고있는데 학교로 인해 일주일에 한번만 야간자율 학습을뺄수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도장에 가게됩니다. 대부분 학생은 방과후학습 후 야간자율학습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학교가

끝나 과외를 가는 학생은 과외를 다니고 집에서 쉬는 학생은 집으로 가게됩니다. 야자를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것도 아닙니다 예체능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와 시간낭비가 될수도 있는지 시간입니다. 학교 방과후보충과 야자를 빼기 위해서는 학원, 도장에서 확인증을 받고 담당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해드립니다. 근데 확인서를 굳이 제출을해야 학생을 믿을지라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방학보충은 방학하기 한달 전부터 가조사를 합니다. 1차때 불참이라고 쓰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2차때 불참을 다시 체크시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학생에게 계속 부담을 줍니다. 3차때는 어쩔수없이 참석에 체크를 하게합니다. 그럼 오전 보충수업만 참석하고 3시에 학교를 마친 뒤 운동을 하러가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운동을 할수있지만 학교등교를 하면 오후 2부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제학습대신 학생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실행 해주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6. 상벌점제의 교육적 효과: 학생은 절반 이상 효과 없다. 교사, 학부모는 절반 가까이 효과있다.

선부부장으로서 상벌점제도는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벌점으로 인해 선생님과 학생이 싸우는 일이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벌점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쉬는시간, 점심시간 남학생들은 복도에서 뛰어다니기도하고 소리를 크게내면서 장난을 치는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이 심하면 친구들끼리 자제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벌점을 주실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벌점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성질을 냅니다. “이게 왜 벌점이에요” 라는 말 하나로 선생님에게 대들다는 표현으로 교사지시불위행 이라는 벌점이 추가됩니다. 그럼 학생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벌점카드에 싸인만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친구들과 있을 때 욕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경우 그 수업시간은 옆드려서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잡담을 합니다. 벌점 카드 하나로 인해 선생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은

“벌점 1점, 2점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어때”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용산고등학교는 작년까지만해도 한 해 받았던 벌점은 신학기에 올라가면 없어졌는데

2016년도 부터는 누적으로 1학년때부터 받은게 3학년때까지 올라가는 제도를 진행하

고있습니다. 그로인해 학생들은 그걸 왜 하냐는 말인 많이 나오고 별점을 받았으면 상점으로 면회를 해야하는데 선생님들은 별점을 많이 주시지 상점을 잘 안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상점을 받기위해서 선생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합니다. 별점 30점이면 학년봉사라고 학년 층을 청소하는 징계입니다. 그걸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하고 장난도 많이 칩니다. 여자 반 청소를 하게되면 여자애들이 불편하다 나가라고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밥을 늦게먹거나 빨리먹고 올라가서 청소를 합니다. 학년봉사 징계를 받으면 수업시간에 수업도 못듣고 청소만 계속해야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치는 학생은 별점을 그냥 무시하고 학교를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7.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고등학생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 학교규칙(그린마일리지 규칙)을 정하는 방법은 학교 각 반 반장, 부반장이 학생회 회의를 열어 학교대표학생(전교회장)과 함께 회의를 진행 후 각 반에 돌아가 반 학생들에게 변경하거나 수정할 사항을 말하고 반장은 그걸 적어서 학생회 회의에 가서 발표를 하고 학생부장선생님은 그걸 듣고 수정해주시는데 학생들이 말했던 의견은 거의 들어주시지 않고 선생님들이 원하는것만 규칙을 수정하고 올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의견을 왜 수집하고, 수정을 해주신다는 말을 했냐는 학생들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수정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수정사항은 아무것도없고 이상한 규칙만 더 추가되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잘안들어주시고 학년내에서 불편한 사항이있으면 학년내에서는 바꿔주시는데 학교 규칙은 바뀌지지가않아서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추진방향

박 병 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I. 들어가며

‘2014년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가 발표되고 대전광역시가 대부분의 학생인권지표에서 부끄러운 상위 등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표본의 크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 할 것이다.

소순영 발제자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대전교육에 있어 학생인권 문제는 반드시 풀어가야 할 아젠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올해 3월에 본 토론자가 발의예정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 타 시도 조례추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전시의 방안, 조례안으로 검토중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II. 타 시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제기된 문제 및 대전시 방안

1. 권리와 책임의 조화 문제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 학생의 책임부분도 담을 수 있게 검토중이다.

2.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갈등 심화 문제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의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어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와 학부모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함께 추진하여 권리 조화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3. 개별 조항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부족과 사회적 합의 문제

학생인권조례 중 특히 문제시되었던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공포, 시행이 이루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사례가 있었다. 대전시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간담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번 토론회 뿐만 아니라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서 3월 제22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Ⅲ. 현재 추진중인 학생인권 조례안 주요내용

현재 추진중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인권증진계획, 제3장 학생인권, 제4장 학생인권위원회, 제5장 학생인권센터, 제6장 학생의회, 제7장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를 기본구조로 검토중이다.

1. 총칙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를 추진하는 목적, 용어정의,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교육감의 책무, 학생의 책무를 담고자 한다. 특히 교육감의 일방적인 책무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책무(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2. 학생인권증진계획

제2장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그리고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시 필요한 여론수렴 절차 등을 검토중이다.

3. 학생인권

제3장에서는 학생인권의 주요사항으로 학습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추진중이다.

특히 강제학습, 체벌, 소지품 검사, 휴대폰 규제, 두발·복장에 관한 권리 같이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인권 권리에 있어 그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있어 법리적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중이다.

4. 학생인권위원회

제4장에서는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5. 학생인권센터

제5장에서는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6. 학생의회

제6장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생의회에 관한 사항을 추진중인데 이 장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7.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학생인권교육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IV. 나가며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보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할 주체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생인권의 중요성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당연히 중시되고 보호되어 왔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되고 공론화를 해보자는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대전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도 학생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교육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담되,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스스로 지킬 학생인권의 기본가치와 실천방안을 제도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재황 장학사의 발제문에서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4년의 시간동안 학교현장이 의미있게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제 곧 우리 대전에서도 조례추진으로 학교현장이 달라질 모습을 기대해본다.

타 지역의 성과를 집약한 모범 대전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란다.

이 병 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1.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결성과 활동

- 지난 5월29일 제1차 학생인권포럼서는, 대전지역 청소년인권증진에 이해를 같이하는 단체들이 모여, 2014년도 전국적인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등을 근거로 대전지역의 열악한 학생인권문제에 공감대를 갖고, 7월7일 2차 포럼을 개최하면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규약을 통과시켰습니다.
- 5월29일 1차 포럼 이후 11월18일에 이르기까지 7개월 동안 7차례의 포럼 개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제정 준비를 해왔습니다.
- 과정에 대전시의회가 박병철 시의원 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공표되었고, 이에 네트워크는 시의회 본회의 질의 및 설동호 교육감 답변 방청, 박병철 의원실서 진행하는 간담회 참석 및 방문면담을 통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에서 정리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했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 * 7월22일 시의원 면담시에 9월 발의 예정될 조례 안에 다음과 같은 조항 등을 담을 것을 제안합니다.
 - ▲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등 실질적 이행 기구 조항을 마련 및 시민참여 보장.
 - ▲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환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발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발의 전에 대전지역 학교인권실태조사, 교사 및 학부모 인식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실행하도록 제안함.
 - ▲ 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간 조례안을 점검하기 위한 TF팀 제안. 여기에는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제안함.

- 8월11일에는 대전시의회학생인권조례정책간담회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학생인권조례 정비사항을 개진함.
- 8월17일 박병철 의원 면담을 통해서 교육청 공무원이(입법정책실에 교육청 파견 공무원이 조례발의안 성안)이 조례안을 평이하게 만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의회 외곽에서는 성평등 조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제제기 하나까 문제가 되는 부분(성수수자, 교권, 복장/두발자유 등)을 가지고 쟁점을 조성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 2015년 12월 3일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해서 공표한 취지

* 2015년 10월 대대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취지

첫째, 대전시성평등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부 교육기득권집단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도 되기 전에, 조례를 형식화 하고 허울뿐인 조례로 제정되는 방향으로 여론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감지됐습니다.

둘째, 또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 대전 교육주체들의 여론환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의원들 포함 모두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폭넓지 못하고 학생인권내용에 대한 파악력이 떨어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시의회에서 흘러 나온 교권조례 우선 제정 하겠다는 이야기 등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고 학생인권을 무력화 하려는 교육기득권의 기존 입장과 비슷한 경향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주체들에게 환기시킬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셋째. 그런데 이미 전북, 서울 등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서는 광범위한 학생권리 규정, 학생인권보장 집행기구의 원활한 활동 보장, 시민 참여 보장, 인권교육의무시간 확보 등 매우 진일보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2015년 8월의 시의회간담회 자리서 확인한 조례안은 먼저 제정된 지역보다도 상당히 후퇴한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 1) 광범위한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전시민 여론을 모아가고, 이를 통해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나설 수 있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 2)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는 대전시학생인권조례가 실제 집행력에서나 인권보장의 범위로나 인권교육의 확대로나 모는 면에서 가장 나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왕 만드는 김에 모범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하자.

(1) 대전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욕구도는 매우 높습니다.

2015년 학생10월 16일~10월30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학생교사학부모의견조사(대전학생인권네트워크 주최 조사결과) 결과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매우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학생은 합해서 74.5%, 교사는 68.9%, 학부모는 86.1%가 나왔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교3주체의 여망이 반영된 설문 결과로 봅니다.

(2) 광주시의 경험을 참조한 의견 몇 가지

발표문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이나 규제가 크게 줄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자살·왕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이 인권의 근본 정신 보다 복장·두발 문제, 체벌, 휴대폰 문제 등 일부 사안 중심으로 축소되어 참여한 찬반 논란으로 전개되다 보니, 실천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교육주체들의 인권감수성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유력한 기제는 교육이다. 이제 학교에서의 인권 담론은 일부 자유권(신체, 개성, 전자기기 사용 등의 자유) 보장의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을 참조하건대,

▶ 조례안에 집행방법이 철저하게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등 실질적 이행 기구 조항을 마련 및 시민참여 보장”을 조례안에 꼭 담아야 할 것들의 목록으로 제출한 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학생자율권의 폭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불필요하며, 조기에 오해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일반인권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인권과 청소년, 아동인권이 다르지 않죠. 학생인권 전에 학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된 인권이 무엇인지 봐야 해요. 70년전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는, 생명권 등 기본적인 권리, 시민적권리, 정치적권리, 경제사회적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인권으로 규정한 범위가 대단히 넓고 앞으로도 계속 인권의 목록을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제1-2조만 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초보적인 청소년들 학생들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자치와 자율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는 광주시의 경험을 참조하여 인권조례 시행 초기에 다잡아 나가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 **심도있는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학생인권조례가 설계되어야 한다.**

한 발 더 나가서 폭넓은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방안이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사례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대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것은 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이고, 학교가 독점했던 교육을 마을 전체가 나누어가지는 배움의 통합적 구성이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강압적인 인권침해는 학교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이 끊임없이 도전 받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행 4년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명암이 있었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성과는 그 취지나 방향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생존경쟁의 장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기르는 터전임을 인식했고, 학생은 규제·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임을 자각해 나가고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 또는 국가단위의 인권침해(모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를 만들어 가야하는 국가의 책무불이행으로 생겨나는 가정파탄도 직간접적으로는 청소년과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학교안의 자율권 신장만으로 온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인권교육이 보다 큰 안목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회구성들의 온전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의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자신은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인지까지 포괄적으로 사고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에서 전국최초로 제정된 노동인권교육조례 등히 학생인권조례 등과 긴밀하게 연계 되어 실질화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다.

학생인권 토론회 토론문

이 건 회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

인권의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삶의 곳곳에서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문제는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대전의 학생인권조례활동에 힘쓰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시사점은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사대상인 4대 의제로 체벌(폭력), 두발·복장규제, 강제 야자·보충, 상벌점제를 뽑았는데, 대전시교육청은 종합점수에서 최악의 학생인권 후진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래의 토론문에서는 소순영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의 발제내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전지역 학생인권실태 현황과 인권증진 방향에 대한 의견

① 체벌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 학생의 48.7%, 교사의 48.2%, 학부모의 47.9%가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체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이런 항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 질의한다.

② 두발·복장의 자유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두발과 복장에 대한 자유에서 77.5%의 학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유권적 측면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차별과 체벌 등 사회권적 측면의 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③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학교의 구성원에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데 학교운영이나 자치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① 차별

- 교과교실제도에서의 우열반 편성과 휴게시간 미보장

교과교실제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일방적 수업 위주, 교과 전문성 신장의 기회 부족, 관리 위주의 학교 모습, 수준에 맞는 교과선택 미흡, 수업 참여율 저조, 타율적 시간관리, 경직된 학교의 조직 편성 등에 대한 문제로 2009년 5월 20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提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과교실제를 도입·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심 내용은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과교실을 구축하고, 학생중심으로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및 행정 인력의 지원과 교원 연수 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주로 그 유형에 의해 결정되며, 주된 유형은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설학교는 선진형으로 도입하고, 기존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하는데, 과목중점형을 선택한 학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선진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선진형은 전 학년 대부분 과목 이동수업을 하고 교과별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과 함께 홈페이지, 미디어스페이스 등의 학생지원시설이 구축되는 유형이고, 과목중점형은 희망하는 2개 이상의 과목을 이동수업하며, 해당 교과의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미디어스페이스 등이 구축되는 유형이다.

대덕구의 B중학교에서는 교과 교실제를 실시하면서 원래 취지를 벗어난 사실상의 우열반 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구의 Y중학교에서는 사실상의 우열반 제도를 반대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제보도 접수되었다. 특히, 교과교실제가 실시되면서 휴게시간이 미보장되면서 학생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교과 준비를 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불만이 팽배해졌다. 대덕구의 B중학교에서는 시범학교가 종료되어 학생과 학부모 설문 등을 통해 교과교실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으나, 학교장의 선택으로 아직도 교과교실제가 시행되고 있다.

- 학생회장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 독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성적순으로 차등을 하는 행위
- 점심식사를 성적순으로 하는 행위

② 폭력 및 위협

- 체벌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관점이 중요 : 체벌은 교권의 한 부분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볼 수 있음
- 학생간 따돌림과 교사에 의한 따돌림의 악순환

③ 교육받을 권리

- 교내외 행사 동원
-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서 수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강제학습(강제야간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강제방과후교실)
- 교과교실제에서의 휴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

④ 사생활 침해

- 두발과 복장 규제
-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압수하는 행위

-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 일기장 검사
- 학교 외에서 이름표 착용 강제
- 휴대폰 사용
-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⑤ 양심과 종교 등

- 학생의 사상/도서 검열 : 학생회장 공약, 외부 활동, 소지 도서나 신문 등
- 강요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 서약서 제출 : 신입생 선서, 순결서약,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 종교 강요
- 의사 표현,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피케팅, 전단지 배포, 교내외 집회, 모임 결성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⑥ 자치 및 참여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하반기에 불용액 처리하면서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
-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대의제로 진행되나 형식적
-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학교의 허락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열
- 학생에게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형식적

⑦ 소수자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겸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사례
-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방향

① 주기적인 실태조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학생인권실태에 대한 분석과 변화지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증진계획의 내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② 무상급식에 대한 명기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였는데, 항상 성장하는 시기의 학생에게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서의 무상급식은 학교현장에서 낙인효과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생들의 기본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무상급식을 학생들의 권리로 명기하고 있다. 대전 인근의 충청남도, 세종시, 충북도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지역에 의한 차별은 인권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도 교육의 일부로 정착되고 있다.

③ 학생인권 증진계획

제출된 조례상에서는 학생인권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는 대전지역의 상황에서는 3년마다 수립하는 방향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에 비해 조례의 제정이 늦은 점, 사회의 변화가 빠르고 학생들의 순환이 중고등학교가 3년 단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5년마다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④ 인권교육 및 연수에 대한 구체성

조례안에서는 학생인권교육 및 교사의 연수, 학부모 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은 형식적 진행을 유발할 수 있다. 시간단위의 명확한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경험하고 실천하는 인권평화교육으로 나아가야

석연희

(대전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장)

인권은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모든 사람의 권리다.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주어진 삶, 민주와 참여, 소통과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김재황 발제자의 발제문(2013년과 2015년 학생 민주인권친화도, 교직원 인권친화도 비교표)에서 나타나듯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광주시 학생인권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학교 민주 인권 친화도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 학생들 보다 광주시 학생들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지표 영역이 골고루 증진된 바,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다.

대전에서도 2015년 10월 학생인권 실태 조사가 이뤄져 지역 학생들의 신체권과 상벌제도 등 인권 실태를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항목으로는 체벌, 두발, 복장, 휴대전화 규제, 강제학습, 상벌제도 등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54.3%가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조사된 만큼, 대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주로 학교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제한성이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의 인권감성을 높이고 평화문화를 향상시키는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는 축소시킬 수 없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이후 진행되는 징계와 처벌과정,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전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청소년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다. 김재황(광주광역시 교육청) 발제문에서 제기된 학교구성원들의 피상적이고 당위적인 규범으로 존재할 우려를 직시하면서도 조례 제정 이후 진행되는 학교생활의 변화와 인권 증진의 장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후 학교 현장 생활지도가 학생들의 자유권 보장 영역과 인지적 인권학습 기초단계를 시작으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과정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인권평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제도권 학생을 포함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학교의 ‘회복적 학부모 모임’ ‘회복적 생활 교육 교사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징계와 처벌 위주의 학생 생활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책임과 치유,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징계와 처벌을 정하는 기구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피스케이커를 양성해야한다.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인	쇄	: 2016년 01월
발	행	: 2016년 01월
발	행 인	: 이 성 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	소	: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빌딩 13층, 대전인권사무소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042-472-9042
전	송	: 042-472-9046
제	작	: 도서출판 창문 042-254-8970

I S B N : 978-89-6114-477-3 93330

비매품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 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